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1월 1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오 영 교
장 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제3조제2항중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를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地方自治團體의 20歲”를 “지방자치단체의 19세”로, “第13條의4에서 “20歲”를 “제13조의4에서 “19세”로,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을 “「공직선거법」”으로,

“20歲 이상의 住民 總數의 20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20歲”를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중 “20歲”를 “19세”로, “기제하여야 한다.”를 “기제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으로 한다.

제13조의3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중전의 제7항)중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를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로 하고, 동조제9항(중전의 제8항)중 “20歲”를 “19세”로, “住民登錄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6169호

관

부

2006. 1. 11. (수요일)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20歲”를 각각 “19세”로 하고, 동조제8항 및 제9항 전단중 “20歲”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85조중 “道에 道知事”를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 “道에 副知事”를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로 하고, 동항제2호중 “道の 副知事”를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중 “道の 副知事は 政務職 또는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며,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를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 중 “道の 副知事”를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제103조 및 제105조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제3항중 “60日”을 “90일”로 한다.

제154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協議體를”을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를”로 하고,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協議體는”을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는”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전의 제4항)중 “協議體의”를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의”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중 “大都市行政의 특례”를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로 한다.

제1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하고, 제13

조의5제2항제4호 단서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15항중 “민사소송등인지법”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하며, 동조제17항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고, 제13조의7제3항 단서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제20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政黨法”을 “「정당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地方公企業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政黨法”을 “「정당법」”으로 하며, 제36조제7항중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4조제2항중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

7호중 “地方公企業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101조의2제1항제4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제103조제5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31조제7항중 “地方稅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157조의2제2항 후단중 “行政代執行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2항·제4조제3항·제85조·제101조제1항 및 제2항·제130조제1항·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③(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④(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1월 1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 관

◎법률 제7847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